

#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지 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07년 11월 18일  
1차 개정: 2009년 3월 20일  
2차 개정: 2021년 3월 19일

1. 목적  
이 규정은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지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3인은 학회장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 내에서 호선한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 연구에 관여한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 결과의 심사 윤리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소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정보를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인용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자의 연구 윤리
  - 1) 연구자는 연구 부정행위를 삼가야 한다.
  - 2)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동일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동시에 기고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5) 연구로 인하여 표본(사람)이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표본에게 사전에 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표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논문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6) 연구 자료의 확보에 있어 연구 대상자나 관련 기관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이러한 절차상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7) 연구 부정행위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표시·자료의 중복사용 행위) 등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삼가야 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8) 미성년자 (만 19 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 자녀 및 4 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 ’ 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특수관계 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 투고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5.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1) 연구 부정행위를 위원회가 인지하였거나 제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이 사안의 심의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2) 연구 부정행위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6. 연구 부정행위자의 제재 및 조치 결과 보고

1)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자격 정지 (최소 3년 이상), 게재논문 삭제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기타 관련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 (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 7.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에 대한 권리 보호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구 부정행위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관련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징계 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